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 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  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 
 전 화 : 490-3315~9



제1546호 2009. 6. 10.

**공 고**

제 2009-459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2
제 2009-460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4
제 2009-461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5
제 2009-462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6
제 2009-463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7
제 2009-464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8
제 2009-465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9
제 2009-466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10
제 2009-467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11
제 2009-468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12
제 2009-469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13
제 2009-470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14
제 2009-471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15
제 2009-472호	구의회 부의안건	공고	.....	16

**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**

- ➡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➡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➡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 → 
 D-2일 편집·교정 → 
 D-1일 편집·교정 → 
 D일 발간

- 🔴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🔴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-459호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중랑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##### ○ 제안의 내용(안 제4조)

-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, 행정의 능률화 방안
- 구 세입증대, 예산절감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

##### ○ 제안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가능(안 제6조)

##### ○ 제안의 제출방법은 특정한 서식없이 현황, 문제점, 개선방안, 기대효과 등을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(안 제7조)

##### ○ 제안의 채택·등급 결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 설치가능(안 제8조)

##### ○ 구성(안 제9조)

- 제안심사위원회 : 10명 이내
  -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.
  - 위원은 각 국장,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중랑구의회 의원 1명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

- 실무회의 : 기획홍보과장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10명 이내
-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(안 제11조)
- 공무원을 제외한 출석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(안 제12조)
- 제안 채택등급은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 가능(안 제16조)
-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, 실무회의 상정 제안제출자에게는 격려(기념)품 지급(안 제17조)

II. 본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과에 비치함(☎490-3320)

2009년 6월 10일

중 랑 구 청 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중랑구 상징물과 구기의 제작, 사용 및 관리 등을 명시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상징물의 종류 : 휘장, 캐릭터, 꽃, 나무, 새, 노래(안 제3조)
- 구기의 제작, 게양 및 관리 등(안 제4조)
- 구청장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(안 제6조)
  -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  - 주요사업이나 행사에의 활용
 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(가) 내지 (다)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 가능
- 상징물의 사용제한(안 제7조)
  -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·사용할 수 없으며,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.
  -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「상표법」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과에 비치함(☎490-3320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에 명시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##### ○ 예우(안 제4조)

-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-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

##### ○ 예산지원(안 제5조)

-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## ○ 지원대상사업(안 제6조)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-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
-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함(☎490-3325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,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)
- 구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자,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, 의원 정수는 동별로 하고, 인구 30,000명 이상인 동은 3명으로 함(안 제3조)
- 구청장은 제도의 필요성, 사명감과 역할,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 교육 등을 시킬 수 있으며, 복지시책을 알려 협력을 구하고,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·제안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(안 제6조, 안 제7조)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함(☎490-3358)

2009년 6월 10일

## 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긴급지원의 연장결정·적정성 심사 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, 적정성 심사,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결정 등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)
-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주민생활지원과장, 사회복지과장,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(안 제3조)
-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 소집(안 제8조)
-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(안 제11조)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함(☎490-3358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##### ○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(안 제4조)

-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 의례 실시
-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계재
-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
-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-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·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
-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##### ○ 지원내용(안 제5조)

- 보훈단체 사무실의 관리, 운영, 유지비의 지원
- 호국·보훈정신 함양·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예산 지원
-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
- 설, 보훈의 달, 추석 등의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위문금품 지원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함(☎490-3359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 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,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일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랑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등 준수(안 제4조)
  -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「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」 및 「디자인 중랑 가이드라인」 준수
- 위원회의 설치(안 제7조제3호)
  -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중랑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함.
- 위원회의 구성(안 제8조)
  - 중랑구 디자인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의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
  - 부위원장 1명을 공동부위원장 2명으로(도시환경국장, 민간위원)으로 확대
- 소위원회 구성(안 제11조)
  - 소위원회 구성 인원 수를 5명 이상으로 명시
-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자전거도로, 지하보도, 블라드 등을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에 포함(안 [별표])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함(☎490-3841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빈곤·위기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적 기능, 정서적 지원, 문화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·운영·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(안 제7조)
-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: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, 임기 2년 (안 제8조)
- 위원회의 기능 :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(안 제9조)
  -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
  -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·관 협력 방안
  -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
  -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비치함(☎490-3493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, 개인에 대한 표창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표창대상을 정함(안 제2조)
  -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표창
- 표창자 결정 방법을 정함(안 제5조, 제6조)
  - 「서울특별시중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」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시민 공적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
- 표창대상자 추천방법을 정함(안 제7조)
  - 담당관·과장 및 동장, 사회단체장 및 장애인단체 등이 추천
- 표창수상자 예우방안을 정함(안 제9조)
  - 표창수상자에 대해 구정홍보,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등 구정참여 기회 제공

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비치함(☎490-3833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·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, 이용하는 민원인 및 구청에 근무하는 상근인력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요금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화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,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.
- 토요일·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되,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
-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으로 하고, 월 정기권은 20,000원으로 한다. 다만, 정기주차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.
-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 비치함(☎490-3310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가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통합방위법」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변경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세부임무수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예규, 동 운영내규의 명문화를 통하여 민·관·군 통합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「통합방위법」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변경 및 삭제(안 제1조, 안 제12조)
- 「민방위기본법」 근거 조항의 변경(안 제9조제2호)
- 통합방위예규 및 동 운영내규 조항 신설(안 제10조제4항, 제5항)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 비치함(전화 : 490-3310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#### 가. 제정이유

구민에게 양질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,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·운영·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「건강가정지원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)
-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가능(안 제9조)
-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1조)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비치함(☎490-3492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가. 개정이유

2006. 10. 4. 「지방재정법」의 전부개정과 2006. 12. 29. 「예산회계법 시행령」이 폐지됨에 따라,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를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“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제1항에 따라”하고, 단서 중 “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”를 “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”으로 개정(안 제4조)
- 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”를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0조 제2항”으로 개정(안 제9조제2항)
- “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”로 개정(안 제13조제1항)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수방재과에 비치함(☎490-3420)

2009년 6월 10일

## 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3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가. 개정이유

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(안 제4조제2항)
-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(안 제7조제3항)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수방재과에 비치함(☎490-3420)

2009년 6월 10일

중랑구청장